

직제규정

2002.12.01. 제정
2015.10.01. 개정
2016.09.01. 개정
2017.05.01. 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(이하 ‘본교’ 라 한다)의 기본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교의 직제는 고등교육법, 사립학교법, 기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 본교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다.

제2장 기본 조직

제4조(조직) 본교의 조직 및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대학원) 본교에는 영어지도학과와 영어교재개발학과를 둔다.

제6조(행정기관) 본교의 행정기관으로 교무행정처를 둔다.

제7조(부속 및 부설기관) ①본교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속 또는 부설 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부속 및 부설기관 기관장은 교원 또는 직원으로 보한다.

제3장 총장

제8조(총장) ①총장은 본교의 제반업무를 통할하고 본 대학을 대표한다.

②총장의 유고시에는 교무행정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의2(명예총장) ①본교 총장 재직중 학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퇴직 후에도 학교발전에 기여가 기대되는 자 중에서 명예총장을 선정 위촉 할 수

있다.

③명예총장은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심의를 거친 후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④기타 명예총장에 대한 대우 및 추대 절차는 별도로 제정한 규정에 의한다.

제4장 보직·임기

제9조(보직·임기) 교무행정처장, 학과장은 전임 교원으로 부속 및 부설기관장은 전임교원 또는 정규 직원 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장 교직원 인사관리

제10조(교직원 인사관리) 교원 및 직원 인사관리규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삭제)

제6장 부속 및 부설기관

제12조(부속 및 부설 기관) ①본교 부속 및 부설기관으로 도서관, 평생교육원, 파닉스연구소 등을 둔다.

②각 기관에 기관장을 두며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③본교의 부속 및 부설 기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.

도서관: IGSE 학술정보원(IGSE Academic Information Center)

평생교육원: IGSE 교육원(IGSE Education Center)

국제교육원: IGSE 국제교육원 (IGSE Global Education Center)

파닉스연구소: IGSE 파닉스 연구소(IGSE Phonics Institute)

제7장 산학협력단

제13조(산학협력단) ①본교에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을 둔다.

②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의한다.

③산학협력단의 영문명은 다음과 같다.

산학협력단: IGSE Office of University & Industry Cooperation

제8장 위원회

제14조(위원회) ①교육 활동 및 학사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심의하고 기타 학교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심의를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>

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기구표

